

<p>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규모와 비슷한 측면에서 과다한 규모라고는 볼 수 없음.</p> <p>그 밖에 조례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운용·심의회, 기금의 운영계획, 기금의 관리·운영방법 등에 관한 내용도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른 기금들과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p> <p>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p> <p>5. 토론요지 : 없음</p> <p>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p> <p>7. 심사결과 : 원안가결</p> <p>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p> <p>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d style="padding: 2px;">의안 번호</td><td style="padding: 2px;">720</td></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2000년 11월 일 문화교육위원회</p> <p>1. 심사경과</p> <p>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교육감</p> <p>나. 회부일자 : 2000년 10월 23일 회부</p> <p>다. 상정일자 : 제123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2000. 11. 9 원안가결)</p> <p>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교육지원국장 이원근)</p> <p>가. 제안이유</p> <p>2001학년도 3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의 중학교 2개교 신설 및 9개교 교명변경, 고등학교 1개교 위치변경 및 3개교 교명변경, 특수학교 1개교 신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6개원을 신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p> <p>나. 주요골자</p> <p>○ 중학교 2개교 신설 및 9개교 교명변경[별표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봉중학교(중랑구 상봉1동 282) · 수송중학교(강북구 번동 456) - 교명변경(남녀공학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인여자중학교→승인중학교, · 전농여자중학교→전일중학교 · 연희여자중학교→연희중학교, 	의안 번호	7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봉여자중학교→신도봉중학교 · 상계여자중학교→상계제일중학교, · 강남여자중학교→강현중학교 · 봉천여자중학교→봉원중학교, · 상도여자중학교→상현중학교 · 성수여자중학교→성원중학교 <p>○ 고등학교 1교 위치변경 및 3교 교명변경</p> <p>[별표3]</p> <p>- 위치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혜화여자고등학교 : 종로구 혜화동 13-1→ 강북구 수유동 468-43 <p>- 교명변경(학과 개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린정보산업고등학교→선린인터넷고등학교 · 동호공업고등학교→동호정보공업고등학교 · 서초전자공업고등학교→서초전자고등학교 <p>○ 특수학교 1교 신설[별표5]</p> <p>- 학교명 : 서울정민학교(노원구 하계동 153-1)</p> <p>○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6개원 신설[별표7]</p> <p>- 유치원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마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마포구 도화2동 347-5) · 서울백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금천구 시흥5동 438-5) · 서울한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용산구 한남2동 726-1) · 서울강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강동구 고덕2동 222) · 서울정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성북구 동소문동7가 118-1) · 서울승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성북구 하월곡1동 84-86) <p>3. 전문위원 겸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윤병국)</p> <p>○ 동조례는 2001학년도 3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의 중학교 2개교 신설 및 9개교 교명변경, 고등학교 1개교 위치변경 및 3개교 교명변경, 특수학교 1개교 신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6개원을 신설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임.</p> <p>○ 이번에 조례 개정에 의해 변경되는 내용을 보면, 중학교 2개교(상봉중, 수송중), 특수학교 1개교(서울정민학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6개원(마포초 병설유치원, 백산초 병설유치원, 한남초 병설유치원, 강덕초 병설유</p>
의안 번호	720		

치원, 정덕초병설유치원, 송곡초병설유치원) 등 12개 학교를 신설하고, 위치변경에 따른 주소변경 1개교(혜화여고 : 종로구 혜화동→강북구 수유동) 그리고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중학교 교명 변경 9개교(승인 여중→승인중, 전농여중→전일중, 연희여중→연희중, 도봉여중→신도봉중, 상계여중→상계제일중, 강남여중→강현중, 봉천여중→봉원중, 상도여중→상현중, 성수여중→성원중)와 학과개편에 따른 고등학교 교명 변경 3개교(선린정보산업고→선린인터넷고, 동호공업고→동호정보공업고, 서초전자공업고→서초전자고)임.

○ 이번에 개정 요구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 조례중개정조례는 다른 조례와는 달리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변경(학교신설 등)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이라기 보다 교명 변경, 주소 변경 등 부수적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 학교 신설이나 이전은 수년 전에 이미 학생수용 계획에 의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개교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따라서 정책결정의 선악을 판단하기보다는 학교 명칭이나 주소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등재하는 것에 불과하여 동 조례가 정책결정의 반영을 위한 성격을 갖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림.

○ 이번에 신설되거나 교명 변경된 학교의 대부분은 학교명칭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동창회, 학부모, 교사, 지역유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개는 40여%에서 많게는 99%까지의 동의를 받고 당해 교명제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특기할 내용으로는 통상 교명변경이나 제정의 경우에는 지역주민이나 동창회,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데 대부분 절대 다수의 동의를 거쳐 제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명 선택에 있어서 치열한 경합의 경우가 있음을.

즉 전농여중을 전일중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전일중이 47%, 전인중 40%로 의견이 양분되었으나 전일중으로 채택되었으며, 도봉여중도 신도봉중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 47%의 찬성으로 채택된 경우이며, 상계여중의 경우에도 45%의 찬성을 받음. 또한 강남여중을 당초에는 신강중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기존의 신강초등학교(양천구 소재)와 혼동할 우려가 있어 다시 강현중으로 변경된 경우임. 또한 선린인터넷고 등학교는 인터넷이라는 의미의 한정성과 생소함으로 인해 당초 교육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유보되었으나 동창회, 학교운영위원회, 교사 등의 절대적인 지지가 확인되어 선린인터넷 고등학교로 제안됨.

또한 서울공진초 병설유치원(1학급)을 신설키로 했으나 1학급 설립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취소된 바 있음.

○ 그 밖의 학교가 신설되는 상봉중학교(공정률 : 91%, 준공예정일 2000.11.20), 수송중학교(공정률 : 80%, 준공예정일 2001.2월 초), 서울정민학교(공정률 : 93%, 준공예정일 : 2000.11.12) 그리고 학교가 이전되는 혜화여고(준공일 : 2000.10.15)는 그 공정률이나 교원확보 등 학교신설을 위한 제반 준비사항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판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립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714
번호	

2000년 11월 일
문화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장
나.회부일자 : 2000년 10월 23일 회부
다.상정일자 : 제123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
위원회(2000. 11. 9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국장 최령)